제996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(산업통상자원부)	1.전기사업 변경허가 사유(강화) ㅇ 동일 읍·면·동 에서의 설치장소 변경 중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허가 심사기준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사업 변경허가 대상 추가 ㅇ 전력계통 연계점 변경시 전기사업 변경허가 대상 추가 ▶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	1.비중요
2	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제도 운영지침 제정안 (중소벤처기업부)	1.경영 지도사 양성주관기관 및 교육기관의 지정기준(신설) ㅇ 중소기업 경영 및 기술 분야 진단·지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강사 2명, 안정적 교육 운영을 위한 상근 관리인력 3명 이상 ㅇ 교육생 4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면적 90㎡ 이상의 강의시설, 온라인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 (임차 포함) ▶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제도 운영지침 제4조,제5조	1.중요
3	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(강화) ㅇ 택시 고령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하는 의료적성검사 실시 기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·고시 하면서, 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적성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○ 3년간 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사람, 도로교통법에 따른 벌점이 81점 이상인 사람은 자격유지검사를 의료적성검사로 대체할 수 없도록 규정 ▶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	
4	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(강화) ○ 화물차 고령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하는 의료적성검사 실시기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면서, 거짓 · 부정한 방법으로 적성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○ 3년간 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사람, 도로교통법에 따른 벌점이 81점 이상인 사람은 자격유지검사를 의료적성검사로 대체할 수 없도록 규정 ▶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	1.비중요
5	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안전관리계획 대상 추가(강화) ○ 기존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추가하여 피난 · 방화시설을 명시하여,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 ▶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2.하자보수계획 통보 대상 추가(강화) ㅇ 사업주체는 청구받은 하자에 대한 보수계획 및 보수결과를 입주자등에게 통보하고 있었으나, 통보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추가 ▶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	2.비중요
6	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(환경부)	1.시장조성자 의무이행 평가기준 변경(신설) ㅇ 일반기, 정산기(6-8월), 시장변동성 확대기로 구분하되, 평가는 월별 평가는 의무이행, 적극성, 정책협조로 동일한 체계로 평가 - 의무이행평가의 '호가제출시간 및 수량을 통합하여 거래시간동안 적정 스프레드의 호가를 균일하게 안정적으로 제출토록 평가 세부항목을 개선 - 적극성 평가는 기존 가점항목을 개선하여 호가스프레드와 호가 수량제출의 적극성을 평가하되, 정산기 및 시장변동성 확대기에는 거래수량을 평가에 포함 ㅇ 정산기 및 시장변동성 확대기에는 만점을 기존 100점에서 110점으로 상향하여 시장조성자의 인센티브를 강화함 ▶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7	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·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(보건복지부)	1.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 중 자료 제출(신설) ㅇ 재생의료기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현황, 이상반응 자료 등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▶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·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4	1.비중요
8	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(식품의약품안전처)	1.고유식별정보의 처리(신설) ㅇ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한 규정 신설 ▶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	1.비중요
9	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(문화체육관광부)	1.징계요구 기준 등(신설) ㅇ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별표 4의3에 따르도록 함 ▶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6	1.비중요
10	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(문화체육관광부)	1.청소년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(신설) ㅇ 청소년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▶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의2	1.비중요